

29.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의안 번호	622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12. 20.
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
운 영 위 원 장

1. 제안이유

- 「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「지방공무원법, 「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」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의회규칙 제 호

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항목)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,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.

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,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.

제3조(자율항목) 대구광역시의회의회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제4조(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)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.

1. 기본복지점수 :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.
2. 근속복지점수 :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,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.
3. 가족복지점수 :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·비속 등 1인당 50점, 둘째 자녀 50점 추가 배정, 셋째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200점을 추가 배정하며, 자녀출산 시 1명당 500점을 배정한다.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.

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, 소수점 이하는

절사하며,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) 의장은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재정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지방공무원법]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조례]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